



제41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제한 시설 범위 확대〉

■ 이주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171호)

2024.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제한 시설 범위 확대	3
※ 참고자료	12
1.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이용 현황(2023년 말 기준)	12

I. 제안경위

2024년 1월 8일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서 사후 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여의도 3.2배 크기인 946만1614m²,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하지만 환경부는 그동안 최대 30년까지 사후 관리를 일괄 적용해 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은 이후 30년 동안 버려진 땅으로 방치돼 왔음. 특히, 공공 매립장이 아닌 민간 매립장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토지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4조).

Ⅲ. 검토의견

1.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제한 시설 범위 확대

현행법¹⁾은 ①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에 있어 침출수 누출 등으로 인한 주민건강 또는 재산,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부장관, 그 외 폐기물의 경우 시·도지사)²⁾ 재량에 따른 토지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② 그 외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종료(폐쇄) 후 30년 이내에 해당 매립시설의 상부 토지용도를 수목식재, 초지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한정하여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사용종료 매립장의 토지용도 제한 비교]

구분		토지용도
주민건강 또는 재산,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	① 위해가 없는 경우	인·허가기관이 토지이용 허용(시설 제한 없음)
	② 위해가 있는 경우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제한

1) 「폐기물관리법」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차.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개정안은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차시설,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사용종료 매립장의 활용 폭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 -----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6호의 행위에 이용되는 토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	--

현재 전국적으로 사후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2023년 말 기준 여의도 면적의 3.4배인 995만 5,740㎡(민간 171만 4,147㎡, 공공 824만 1,593㎡) 규모이나, 이러한 토지 용도 제한에 따라 민간 매립장의 토지 이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변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종료 매립장 상부토지에 주차시설, 야적장³⁾, 물류시설,

³⁾「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종료 매립장 11곳(민간 7곳, 공공 4곳)에 대해 인·허가기관이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의 용도제한 시설 이외에 농지, 야적장, 주차장, 폐기물선별시설 등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⁴⁾한 바 있고, 일본⁵⁾ 등 해외에서도 사용종료 매립시설을 농지, 야적장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제한 시설 외 토지이용현황]

구분	위해성유무 ¹⁾	시도	시군구	업체명	소재지	매립면적 (천㎡)	토지이용 현황	허용 시점 ⁴⁾
민간	무	대전	대덕구	(주)동양환경	문평동로 48번길 125	10.9	주차장	'02
	무	전남	여수시	(주)와이엔텍	여수산단로1232(월내동)	7.2	폐기물 분리·선별장	'02
	무	울산	남구	(주)코엔텍	용잠로 328	70.8	야적장, 주차장	'10
	무			NC울산(주)	남구 용잠로 339	4.7 12.1	주차장	'12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현행 법령에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각 지자체의 매립장 상부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결과 지자체 등 인허가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을 토대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5) 일본 요코하마시의 매립시설 중 29%는 농지(뿌리를 내리는 재배작물을 제외하고, 오이와 양배추를 주로 재배)로, 민간 건설을 통한 사업소 및 주택(38%),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16%), 야적장 및 주차장(11%)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위 해 성 유 무 1)	시도	시군구	업체명	소재지	매립면 적 (천㎡)	토지이용 현황	허용 시점 4)
공 공	무			(주)유성	남구 용잠로 419	6.3	야적장	'13
						4.5		
						14.9		
	무			(주)EG메탈	남구 처용로 687	12.6	야적장, 주차장	'16
	무			홍창산업(주)	온산읍 화산로 71-16	33.4	야적장	'09
	무	충남	천안시	성거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97	5.8	농지 ²⁾	'02 종료 ⁴⁾
공 공	무	전북	전주	호동골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2	99.1	공원시설 및 양묘장 ³⁾ 운영	'07
			남원	운봉	전북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486	26.4	차고지 (대부 중)	'08 종료 ⁴⁾
	무	울산	울주군	온산확장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449	51.5	야적장	'23
	전체 합계					360.2		

주1) 주민건강 또는 재산, 주변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

주2) 성거읍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시설 조성 당시 토지소유주와 토지사용승낙 임대계약을 통해 매립을 진행한 바 있고, 이후 매년 사후관리(매립 가스, 침출수, 지하수, 토양오염도 등 조사)를 하고 있으며 5년마다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주3) 환경부는 덕진구 매립시설에 현재 운영 중인 양묘장은 주로 수목의 식재로 활용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주4) 지자체 확인 결과 인·허가 자료가 부재한 경우 사용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허용 시점을 작성함.
자료: 환경부

또한,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⁶⁾, 토지이용계획서 검토⁷⁾ 등을 통해 인·허가기관이

6)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제69조의2·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신고 시 사후관리계획서 제출·승인, 사후관리 기준·방법 준수, 3년 주기 정기검사, 시정명령 및 미이행 시 벌칙 조항 등 사후관리를 통해 사용종료 매립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방역, 주변환경영향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토지의 용도 및 용도제한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인·허가기관이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안전 및 환경 위해성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은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 환경상 위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안전성 및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준·방법 요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구 분		사후관리 기준	
침출수 관리수위		2m 이하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	대상항목	BOD, COD, 총질소, 폐놀류, 중금속류 등 28개 항목	
	측정주기		분기 1회
	보고주기	분기 1회	분기 1회
	예외사항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필요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관리계획	·축대벽, 둑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 관리계획 수립·시행 ·사면이나 최종복토층 손상 우려에 따른 방지계획 수립·시행	
	모니터링	지반침하 여부 관측(연 2회, 면적 1만㎡당 측정점 2개소 이상) ※ 지표면이 일정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관리	
방역		해충 방지를 위한 방역계획 수립·시행(월 1회 이상 방역 실시)	
주변 환경 영향 종합보고서	대상항목 및 주기	침출수(분기 1회), 지하수(분기 1회, 최초 3년 월 1회), 해수(분기 1회), 발생 가스(연 1회, 최초 5년 분기 1회), 구조물 및 지반 안정도(연 2회), 지표수(반기 1회), 토양(연 1회)	
	보고주기	매 5년 작성·제출	

자료: 환경부

7)「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반의 구조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화물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시설⁸⁾의 경우 설치규모와 구조물의 형태, 반·출입 화물의 종류와 무게 등에 따라 구조 안정성의 예측이 곤란하고, 상주 인력의 환경 위해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물류시설은 중장기 검토를 통해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둘째, 주차시설, 물류시설 등의 경우 시설물 설치·이용 시 환경·안전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51조⁹⁾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¹⁰⁾ 할증 또는 시설물 건축시 사고책임보험 가입 의무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9) 「폐기물관리법」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0) 사후관리 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중 주민안전 위험 및 환경위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2023년 말 기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은 운영 중인 매립장 73개소, 사후관리 매립장 74개소로 누적적립액은 현금 516억원, 보험 3,844억원, 담보물 234억원 등 총 4,594억원 규모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누적적립액(2023년 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현금	보험	담보물	합계
운영중	268	2,991	228	3,487
사후관리	248	853	6	1,107
합계	516	3,844	234	4,594

자료: 환경부

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한편, 개정안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현행법령의 규율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령은 사용종료 매립장이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부토지에 설치·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일부 매립장의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상부토지를 농지, 양묘장¹²⁾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용종료 매립장의 안전 및 환경기준 요건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인·허가 기관이 토지이용 허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¹³⁾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설 유형별 구조물의 하중 정도, 지반침하 진행 정도, 침출수 및 발생 가스량 등 안전 및 환경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기준을 선행적으로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¹⁴⁾가 있음.

11) 참고로 폐기물 매립장 상부토지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사유재산에 해당하고,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자의적으로 토지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을 통해 토지이용 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이용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 천안시 성거매립장의 경우 농지로, 전주 호동골 매립장의 경우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13) 법령에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인허가기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빗물배제, 침출수 관리, 지하수·해수 수질, 발생가스 관리,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등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을 토대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임.

14) 참고로 일본의 경우 매립시설 토지이용 시 토지형질변경 시행에 해당하는 주변생활 환경영향조사 계획서, 공사계획서, 지정구역 도면, 토지형질 변경 후 해당 토지의 이용 방법을 명확히 한 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형질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의 영향을 조사하고

문 의 처
02)6788-5533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 참고자료

1.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이용 현황(2023년 말 기준)

구분	위해성유무 1)	시도	시군구	업체명	소재지	매립면적 (천㎡)	토지이용 현황	허용 시점
민간	무	경기	화성시	케이씨환경 개발(주)	서신면 전곡리 630-5 외	23.3	태양광 발전설비	'07
						25.6		'19
						36.1		
						65.1		
	무		이천시	SK하이닉스	부발읍 경충대로 2091	16.5	체육공원 (축구장, 족구장)	'02
	무	대전	대덕구	(주)동양환경	문평동로 48번길 125	10.9	주차장	'02
	무	전남	여수시	(주)와이엔텍	여수산단로1232(월내동)	7.2	폐기물 분리·선별 장	'02
	무	울산	남구	(주)코엔텍	용잠로 328	70.8	야적장, 주차장	'10
	무			NC울산(주)	남구 용잠로 339	4.7	주차장	'12
						12.1		
	무			(주)유성	남구 용잠로 419	6.3	야적장	'13
						4.5		
	무			(주)EG메탈	남구 처용로 687	14.9	야적장, 주차장	'16
12.6								
무		울주군	홍창산업(주)	온산읍 화산로 71-16	33.4	야적장	'09	
민간부문 합계						344		
공공	무	부산	해운대구	석대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산123	662.6	체육시설(축구장,테 니스장) 이용및 수목원조 성	'96
	무	인천	서구	수도권 1매립지	인천 서구 백석동 58	4,100.0	체육시설 (골프장)	'08
	무	경기	이천시	장호원	경기 이천시	11.5	체육시설	'97 종료

구분	위 해 성 유 무 1)	시도	시군구	업체명	소재지	매립면 적 (천㎡)	토지이용 현황	허용 시점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8		(축구장)	
			이천시	소고리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산129-1	44.9	체육시설 (야구장)	'08 종료
			성남시	상대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420	13.4	체육시설	'15
			안성시	장서리	경기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산 58-5	20.0	체육시설 (국궁장)	'02 종료
			화성시	팔탄	경기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44-1번지 일원	25.4	체육시설 (축구장)	'01 종료
	무	강원	평창군	대화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734	17	파크골프 장	'09 종료
	무	충북	청주시	문암	충북 청주시 홍덕구 문암동 100	210.5	공원	'07
			제천시	고암	충북 제천시 고암동 188	23.9	체육시설 (골프장)	'08
			보은군	갈목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19-3	11.0	체육시설 (축구장)	'20 종료
			진천군	이월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산39-2	9.9	태양광	'20 종료
	무	충남	천안시	백석	충남 천안시 백석동 574	46.0	파크골프 장 착공	'21
			천안시	성거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97	5.8	농지 ²⁾	'02 종료
			아산시	선창	충남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195	2.5	공원	'04 종료
			아산시	구성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282-3	11.2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4 종료

구분	위 해 성 유 무 1)	시도	시군구	업체명	소재지	매립면 적 (천㎡)	토지이용 현황	허용 시점
무							운영(한국 서부발전)	
			서산시	양대동	충남 서산시 양대동 771	80.0	스포츠 테마파크	'07 종료
			태안군	산후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352-20	4.1	자연생태 공원	'03 종료
	무	세종	세종	연기	세종 연기면 눌왕리 698	41.9	체육시설 (골프장)	'10
	무	전북	전주	호동골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2	99.1	공원시설 및 양묘장 ³⁾ 운영	'07
			전주	서신대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889-7	50.9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운영	'04
			전주	효자대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87	16.0	공원	'06
			군산	하제	옥서면 선연리 1358-147	17.2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운영	'99 종료
			익산	용안	전북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 141	54.0	체육시설 (야구장 등)	'04
			정읍	영파	전북 정읍시 영파동 406-2	4.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운영	'98 종료
			정읍	광역(1공구)	전북 정읍시 영파동 400-1	27.8	체육시설 (야구장)	'06 종료
			김제	죽산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392-6	18.0	공원	'97 종료
			남원	인월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597	9.9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00
			남원	운봉	전북 남원시	26.4	차고지	'08 종료

구분	위 해 성 유 무 1)	시도	시군구	업체명	소재지	매립면 적 (천㎡)	토지이용 현황	허용 시점
무					운봉읍 북천리 486		(대부 중)	
			남원	주생	전북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293	29.1	생태습지 공원	'10
			부안	줄포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1034-16	19.6	초지	'06
	무	전남	영광	단주	전남 영광군 단주리 산24-1	2.1	체육시설 (골프장)	'04 종료
	무	경북	구미	구포	경북 구미시 구포동 498-1	86.4	공원	'07 종료
			경산	영대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40번지	7.6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03 종료
			포항	오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리 산34	24.1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19
			칠곡	지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653	1.6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11 종료
	무	경남	창원	덕산 1(1-1공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582-1	12.7	해군체력 단력장 (골프장)	'15
			창원	덕산 2(1-2공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582-1	12.8	해군체력 단력장 (골프장)	'15
			함안	군북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643-5	7.8	근린공원 및 파크골프 장 조성	'11 종료
			밀양	고사	경남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932	12.6	공원	'98 종료
	무	울산	울주군	온산확장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449	51.5	야적장	'23

구분	위해성유무 1)	시도	시군구	업체명	소재지	매립면적 (천㎡)	토지이용 현황	허용 시점
공공부문 합계						5,933.2		
전체 합계						6,277.2		

주1) 주민건강 또는 재산,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

주2) 성거읍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시설 조성 당시 토지소유주와 토지사용승낙 임대계약을 통해 매립을 진행한 바 있음.

주3) 덕진구 매립시설에 현재 운영중인 양묘장은 주로 수목의 식재로 활용되고 있음.

주4) 지자체 확인 결과 인·허가 자료가 부재한 경우 사용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허용 시점을 작성함.

자료: 환경부

